춘천학연구소 운영 규정

제정 2008. 10. 30. (규정 제5호)

전부개정 2019. 1. 9. (규정 제16호)

일부개정 2019. 4. 1. (규정 제17호)

전부개정 2020. 1. 6. (규정 제32호)

일부개정 2021. 2. 26. (규정 제45호)

일부개정 2021. 5. 25. (규정 제49호)

일부개정 2024. 1. 26. (규정 제61호)

제1조(명칭) 이 연구소는 춘천문화원 부설 춘천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춘천문화원 정관 제4조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하는 사업 중 지역사의 조사 연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춘천지역 문화 창달과 춘천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연구소는 그 사무소를 춘천문화원에 둔다.

제4조(직무 및 사업) ① 연구소는 춘천 지역사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과 조사ㆍ연구, 출판 등의 제반 학술적 활동을 수행한다.

②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2. 1호 관련 연구 및 연구지원

3. 각종 연구 성과물의 발간 보급

4. 장ㆍ단기 학술사업의 개발

5. 학술회의 개최 및 유관기관과의 학술 교류

6. 문화원 교육사업 지원 및 지역학 교육교재 개발ㆍ발간

7. 기타 연구소의 설립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및 위 각호의 부대사업

제5조(소장) ① 소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1. 2. 26.>

②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의 모든 업무를 관장한다.

제6조(학예연구관) ① 문화원의 직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학예연구관(이하 연구관)을 둔다.

② 연구관은 제12조의 자격기준과 문화원 인사규정의 임용기준 및 절차에 따라 원장이 임명한다.

제7조(학예연구사) ① 문화원의 직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학예연구사(이하 연구사)를 둔다.

② 연구사는 제12조의 자격기준과 춘천문화원 인사 규정의 임용기준 및 절차에 따라 원장이 임명한다.

③ 연구소에 근무하고 있는 연구직이 강의, 세미나 참석, 현지 연구 활동 등을 위한 원외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장이 주당 8시간 이내로 승인할 수 있으며, 이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해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구직의 원외 학술 활동이 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가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비상임 연구위원) ① 연구소에는 직제 규정이 정한 정원 외에 연구 자료의 교환과 공동연구를 위한 비상임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 비상임 연구위원은 춘천 지역사 연구 실적이 있는 인사를 소장의 추천에 의하여 원장이 위촉한다.

③ 비상임 연구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비상임 연구위원의 활동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자료 및 정보교환

2. 우리 원이 부과한 연구과제의 수행

3. 우리 원과의 공동연구

4. 자료의 공동수집 및 분석

5. 기타 연구소의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활동

제9조(객원 연구위원) ① 연구소에는 특정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직제 규정이 정한 정원 외에 객원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 객원 연구위원은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소장의 추천에 의하여 원장이 위촉한다.

③ 객원 연구위원은 연구과제 수행기간을 그 임기로 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소의 운영 및 연구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은 지역학연구자, 지역문화단체 임직원, 지역학 관련 공직자 중에서 소장이 추천하여 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 2. 26.>

③ 운영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⑤ 연구소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개정 2021. 2. 26.>

⑥ 간사 1인을 두되, 연구사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고 위원회 제반 사무의 처리 및 의사록의 정리 보관을 담당한다.

⑦ 운영위원회 자문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소의 기본운영지침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연구과제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연구결과의 평가, 발표, 출판에 관한 사항

4. 학술연구지 및 각종 도서출판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관하여 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1조(연구팀) ① 연구소의 특정 연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연구팀의 연구책임자(팀장)는 연구관 중에서 소장이 임면한다.

③ 팀장은 소장의 지시를 받아 해당 연구 업무를 통할한다.

④ 연구팀원은 연구사, 비상임 연구위원, 객원 연구위원 중에서 구성하되 소장이 임면한다.

제12조(임용자격) 연구소 직원을 임용할 때에는 인사 규정의 임용기준과 다음 각 호의 임용자격을 준용한다.

1. 연구관

가.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춘천지역학 관련 연구 실적 3편 이상을 발표하고 대학, 연구소, 박물관 등 연구 유관기관에서 경력 10년 이상인 자

나.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24. 1. 26.>

2. 연구사

가. 박사과정을 수료한 자로 춘천지역학 관련 연구 실적 2편 이상을 발표하고 대학, 연구소, 박물관 등 연구 유관기관에서 경력 5년 이상인 자

나.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24. 1. 26.>

3. 연구원

가. 석사학위를 소지한 자로 지역학 관련 연구 실적 1편 이상을 발표하고 대학, 연구소, 박물관 등 연구 유관기관에서 경력 3년 이상인 자

나.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신설 2024. 1. 26.>

4. 부연구원

가. 석사과정을 수료한 자로 대학, 연구소, 박물관 등 연구 유관기관에서 경력 3년 이상인 자

나.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신설 2024. 1. 26.>

제13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분기 첫 달에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이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요구할 경우 소집한다.

④ 소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위원장이 된다.

제14조(사업계획서) 소장은 다음 연도에 수행할 연구소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매년 11월 말까지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5조(수당) 비상임 연구위원 또는 특정 연구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객원 연구원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회의 참석 및 연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2008. 10.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1.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4.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1. 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2.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5. 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1.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